

## 4. 상세내용

### 가. 공급사평가관리 지침

기존	개정(안)	수정이유
<p>제3조(용어의 정의)</p> <p>4. “성과분석”이라 함은 납품실적 및 사용자의 평가자료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b>SG별</b> 공급사를 우수, 양호, 불량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p> <p>4. “성과분석”이라 함은 납품실적 및 사용자의 평가자료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공급사를 우수, 양호, 불량 <b>등</b>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p>	<p><b>SG별</b> 공급사 성과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SG별’이란 범위를 삭제함.</p>
<p>제8조(성과분석)성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p> <p>1. 성과분석은 대학에 <b>연구장비를</b> 납품하는 공급사의 <b>SG별</b> 연간 납품 실적을 대상으로 연간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별도로 부정행위에 관한 기준을 운영한다.</p>	<p>제8조(성과분석)성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p> <p>1. 성과분석은 대학을 <b>대상으로</b> 납품하는 공급사의 연간 납품 실적을 대상으로 연간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별도로 부정행위에 관한 기준을 운영한다.</p>	<p><b>연구장비 및 SG으로 성과분석 대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b></p>
<p>제8조(성과분석)</p> <p>6.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b>별표1과 같다.</b></p>	<p>제8조(성과분석)</p> <p>6.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b>별표1과 같다.</b> 단, 거래제한 대상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한은 가감될 수 있으며,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불이행, 부정행위로도 거래제한 될 수 있다.</p>	<p><b>대학이 받은 피해의 정도(감사결과, 의사결정 등)에 따라 거래제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1의 내용으로 부정당, 비윤리 행위 전체를 나열할 수 없으므로 과거 규정과 같이 기타 부정당, 비윤리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포스코 등 감사에서 근거 규정없이 상향하여 거래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정거래 Risk로 판단됨.)</b></p>

기존	개정(안)	수정이유
<p>나. <b>별표1</b>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하여는 <b>발생 즉시</b> 해당 계약건을 <b>해지하고</b>, 대학과의 모든 거래 자격을 제재기간 동안 <b>제한하며</b>, 동 공급사가 제재기간 종료 후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SG에 대해 재등록 요청시에는 공급사 실태조사를 <b>실시하고</b>, 신규 공급사 평가기준에 의거 합격시 해당 SG에 등록한다. 단, SG 운영부서 심의결과 제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기간 종료 후 SG 자격을 재부여 한다.</p>	<p>나. <b>별표1 등에서</b> 정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건을 <b>해지할 수 있고</b>, <b>거래제한이 결정된 공급사에 대하여는</b> 대학과의 모든 거래 자격을 제재기간 동안 제한하며, 동 공급사가 제재기간 종료 후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SG에 대해 재등록 요청시에는 공급사 실태조사를 <b>실시할 수 있고</b>, 신규 공급사 평가기준에 의거 합격시 해당 SG에 등록한다. 단, SG 운영부서 심의결과 제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기간 종료 후 SG 자격을 재부여 한다.</p>	<p><b>계속적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규정/지침/약관 등에 거래제한에 대하여 가능사항(할 수 있다.)으로 모두 명시하고 계약해지만 의무사항으로 정해놓은 것은 오류로 판단됨.</b></p>
<p>다. <b>부정행위의</b> 공급사는 임원 및 임원의 특수 관계인 등 <b>사실상 동일인 또는 동일인</b>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p>	<p>다. <b>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의</b> 공급사는 임원 및 임원의 특수 관계인 등 <b>사실상 동일인(법인 포함)</b>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p>	<p><b>계약불이행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거래제한을 적용함.</b> <b>중복되는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법인이 포함되는 것을 명기하여 오해석 사례를 방지함.</b></p>

기존	개정(안)	수정이유
<p>라. 매도인이 [별표1]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를 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b>시정을 권고하고</b>, 매도인이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b>별표1</b>에서 정하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p>	<p>라. 매도인이 [별표1] 등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를 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b>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b>, 매도인이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b>별표1</b> 등에서 정하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p>	<p><b>부정당, 비윤리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시정 불가)가 대부분이며,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시정 권고 절차를 거칠 수도 있도록 함. (필수 프로세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실무에 적합하지 않음.)</b></p>
<p>마.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b>공급사</b>에게 <b>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b>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b>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b></p>	<p>마.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공급사에게 <b>제재기한 중 또는 제재기한 종료 후 2년</b>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b>별표1 등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b></p>	<p><b>거래제한 기간 중 또는 제재기한 종료 후 2년 이내 다시 부정행위 등을 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확대)하고, 그 가중 범위에 대하여는 별표를 기준으로 재량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b></p>

※ 거래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표1의 기본 Guide가 존재하므로, 중복된 고의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의 재량적 가중 제한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16 공문, 대법원 2008.12.16.자2007마1328 판례 등 참조)

기존	개정(안)	수정이유
<p>바. 부정공급사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1의 사유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재 기준에 의한다.</p>	<p>바. 부정공급사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거래제한 기한을 가중할 수 있으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거래제한 기한을 정한다.</p>	<p>형법 제5절 경합범의 법원칙을 기준으로 포스코에서 제정된 조항으로 보이나, 수개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실체적 경합, 형법 제38조 外) 가중하여 제재하는 것이 법원칙상 정확한 적용이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에는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으로 판단됨.(가목과 부합할 수 있게 가중의 범위는 명시하지 않음.)</p>
<p>사. SG 운영부서에서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공급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경우,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성 여부 및 해당 공급사의 대학에 대한 기여정도 등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사.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 공급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경우,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성 여부 및 해당 공급사의 대학에 대한 기여정도 등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재 기한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가목의 근거에 의해 거래제한 감경 기한을 특정하지 않도록 하며, 면제할 수 있음에 대하여도 명확히 함.(실무에서 면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p>

기존	개정(안)	수정이유
<p>아. 금품제공 등 비윤리 행위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대학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p>	<p>삭제</p>	<p>대학은 포스코와 다르게 출입제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1 등에 명시되어 있음.</p>
<p>자. 대학의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행위 혹은 부정당행위로 인해 모든 거래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 이 출자한 법인과 거래 또는 모든 계약에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p>	<p>아. 대학의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행위 혹은 부정행위로 인해 모든 거래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의 공급사 평가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p>	<p>대학을 상대로 부정, 비윤리 행위를 행한 업체는 포스코 패밀리사와의 거래시 공급사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명시함. 동일한 수준의 공동 거래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 Risk가 있어 완화하여 적용함.(포스코 개정 시행사항 적용)</p>
<p>차.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 이 출자한 법인에서 제재한 공급사의 경우, 대학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제재시 대학은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p>	<p>자.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 이 출자한 법인에서 제재한 공급사의 경우, 대학의 공급사 평가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p>	<p>포스코(패밀리)를 상대로 부정, 비윤리 행위를 행한 업체는 대학과의 거래시 공급사 평가 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공정거래법 위반 Risk로 완화 적용</p>